

촉지도 표준안

- 슬라이드 1
- 제목 : 201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 부제목 : 촉지도 표준안(사용 가능한 제작을 위해)

- 슬라이드 2
- 제목 : 목 차
- 내용 :
 1. 배경 및 목적
 2. 추진경위
 3. 촉지도 표준안 소개
 4. 토의

- 슬라이드 3
- 제목 : 배경 및 목적 (1)
- 내용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의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
 -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설치.
 - 이전까지 올바른 기준이나 지침 없이 제작되어 왔던 촉지도.
 - 실제 시각장애인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구사항 정리

- 슬라이드 4
- 제목 : 배경 및 목적 (2)
- 내용 :
 - 촉지도의 정의, 촉지도 전체 크기 및 재질, 표시방법에서의 치수 규정.
 - 실무자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
 - 촉지도 단체표준을 2014년 말까지 제정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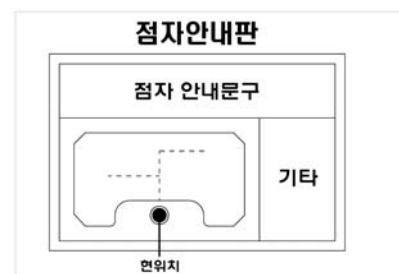
- 슬라이드 5
- 제목 : 추진경위
- 내용 :
 - 편의시설 촉지도 간담회 개최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 실무회의 개최
 - 편의시설 촉지도 제작업체 회의(1~6차) 개최
 - 장애인 관련단체 자문회의(1~3차)
 - 전문가 자문회의 건토의견 조사
 -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표준안 마련 확정
 -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표준 마련 공청회 개최

- 슬라이드 6
- 제목 : 표준안 주요 고려사항
- 내용 :
 - 도면 정보의 간략화.
 -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공간 인지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제공.
 - 도드라진 촉지도 테두리, 건물외형선, 유도 동선 마련.
 - 촉지도 크기 규정.
 - 올바른 점자 표시 방법.

- 슬라이드 7
- 제목 : 기존 디자인과 표준안 샘플 비교
- 내용 :



▲ 사무실명을 범례로 표기하였으며 불필요한 공간정보까지 기입하여 실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불가능한 기존의 촉지도 사례



▲ 촉지도 표준안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촉지도 샘플

- 슬라이드 8
- 제목 : 표준안 목차
- 내용 :
 1. 적용범위
 2. 인용 표준
 3. 용어와 정의
 4. 축지도상에 표시되는 정보내용
 5. 표시 방법에 관한 요구사항
 6. 축지도 형상부속서 A (참고) 축지도에 표시될 정보 항목
부속서 B (참고) 축지도에 이용할 수 있는 축지 기호

- 슬라이드 9
- 제목 : 인용표준
- 내용 :
 - KS B 6895
 - KS A 0901
 - JIS T 0921
 - JIS T 0922
 - JIS S 0052

- 슬라이드 10
- 제목 : 정보 항목의 원칙
- 내용 :
 - 실제 시설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는 생략
 - 주요 편의시설과 설비 : 돌출된 선 및 면, 점자, 축지 기호 표시
 - 안전, 원활한 이동 지원하는 정보 항목 우선
 - 제시된 굵기 및 높이에 대한 치수 사용
 - 해당 층만 표시 원칙
 - 일반인도 사용 가능하도록 목자 병기

- 슬라이드 11
 - 제목 : 축지도 내의 구성
 - 축지도 테두리
 - 건물 외형선
 - 유도 동선
 - 현위치
 - 점자
 - 목자(일반글자)
-
- 슬라이드 12
 - 제목 : 표시 방법에 관한 요구사항
 - 내용 :
 - 음각 금함, 손빔 방지, 쾌적한 축지의 마감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 단체 검토 의뢰(간소화, 변형 불가시)
 - 복도와 실내 영역 구분(복도 질감 차이)
 - 건물 등의 주출입구 : 열기 표시
-
- 슬라이드 13
 - 제목 : 축지도 테두리(1)
 - 가장 굵고, 높은 돌출된 실선과 치수
 - 실선 굵기 : 3mm 이상, 높이 : 0.6mm 이상
-
- 슬라이드 14
 - 제목 : 축지도 테두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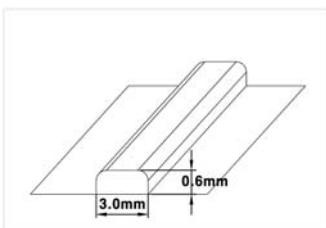


그림 1. 축지도 테두리 치수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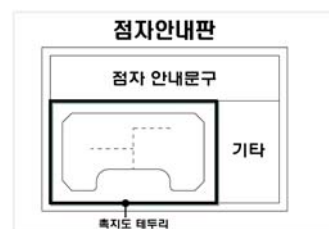


그림 2. 축지도 테두리 평면도

- 슬라이드 15
- 제목 : 건물 외형선(1)
- 내용 :
 - 전반적인 공간배치 현황
 - 돌출된 실선 사용
 - 실들은 균일한 형태로 매듭
 - 촉지 편의성 확보(변형 가능)
 - 사무실이나 주요시설 등 출입문 위치 : 해당영역 열기 표시
 - 공원의 원로, 차도 등 다른 종류의 시설 등 : 건물 외형선과 같은 실선 사용
 - 실선 굵기는 2.5mm 이상, 실선 높이는 0.6mm 이상

- 슬라이드 16
- 제목 : 건물 외형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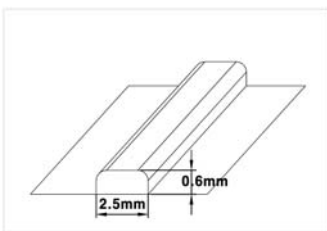


그림 3. 건물 외형선 치수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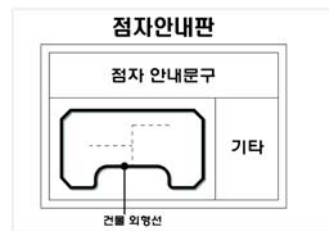


그림 4. 건물 외형선 평면도

- 슬라이드 17
- 제목 : 유도 동선(1)
- 내용 :
 - 현위치에서 시작, 종합안내소까지 유도
 - 1개의 유도 동선 사용 원칙
 - 예외 : 동일 단지 내 건물이 본관과 각 별관 등 여러 동으로 구성, 공원안내도
 - 종합안내소가 없을 경우, 안내가 가능한 곳 대체
 - 파선 굵기는 2.5mm 이상, 파선 높이는 0.6mm 이상

- 슬라이드 18
- 제목 : 유도 동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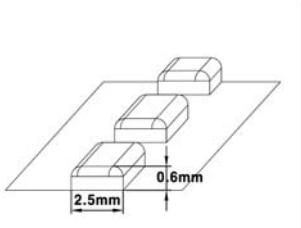


그림 5. 유도 동선 치수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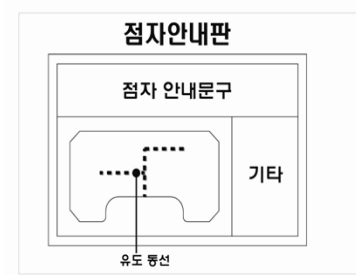


그림 6. 유도 동선 평면도.

- 슬라이드 19
- 제목 : 현위치 (1)
- 내용 :
-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
- 가장 하단에 배치
- 높이 : 5mm 이상, 반구형

- 슬라이드 20
- 제목 : 현위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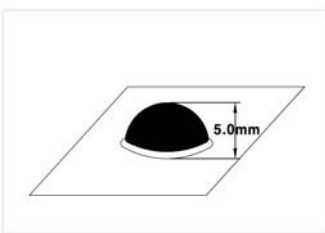


그림 7. 현위치 치수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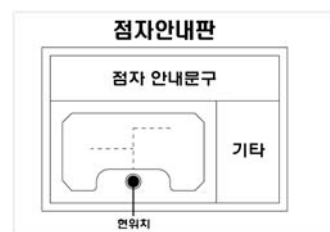


그림 8. 현위치 평면도

- 슬라이드 21
- 제목 :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촉지 기호
-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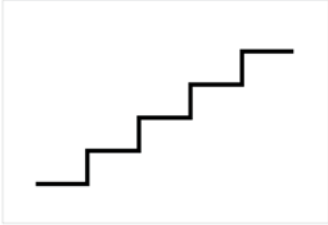


그림 9. 계단 촉지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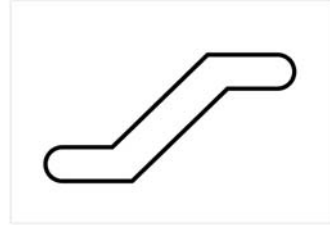


그림 10. 에스컬레이터 촉지 기호

- 슬라이드 22
- 제목 : 종합안내소 및 개찰구 촉지 기호
- 내용 :



그림 13. 종합안내소 촉지 기호



그림 14. 개찰구 촉지 기호

- 슬라이드 23
- 제목 : 승강기 촉지 기호(2가지)
-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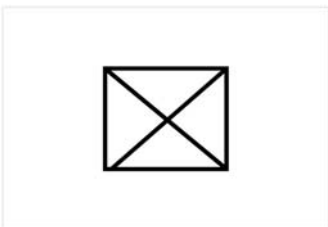


그림 15. 승강기 촉지 기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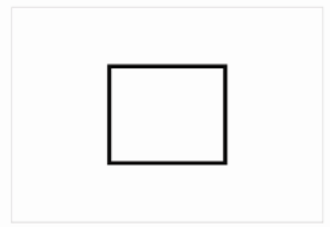


그림 16. 승강기 촉지 기호(2)

- 슬라이드 24
- 제목 : 자동판매기 촉지 기호(2가지)
-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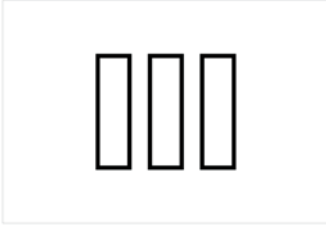


그림 17. 자동판매기 촉지 기호(1)



그림 18. 자동판매기 촉지 기호(2)

- 슬라이드 25
- 제목 : 경사로 촉지 기호(2가지)
- 내용 :



그림 19. 경사로 촉지 기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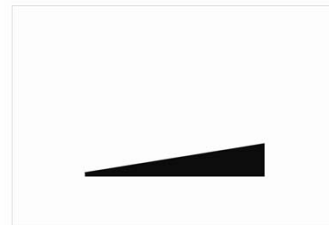


그림 20. 경사로 촉지 기호(2)

- 슬라이드 26
- 제목 : 점자 표시 (1)
- 내용 :
- 점자표기법 :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 발간)
- 점자의 치수 및 형상 규격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 점자 규격, KS B 6895(기술 표준원)
- 반구형 원칙, 부식형 사용 금함.
- 촉지도 가로축 방향과 평행
- 주요 시설과 설비명 : 해당 영역에 점자 기입

- 슬라이드 27
- 제목 : 점자 표시 (2)
- 내용 :
 - 양각화된 픽토그램으로 표시 금함.
 - 건물 외형선 내 : 해당 영역 벗어남 금함
 - 축지 기호 점자 표시 : 최대한 인접하게 배치
 - 점자와 돌출된 선 간격 : 5mm 이상
 - 한 줄로 점자 표기 불가능시 : 두 줄로 표기
 - 영역 내 모두 기재 불가능시 : 점자 약자 사용

- 슬라이드 28
- 제목 : 목자(일반 글자)
- 내용 :
 - 원칙 : 양각화 금지
 - 인쇄, 이와 유사한 방법 : 일상적인 사용시에 지워짐 방지
 - 저시력 시각장애인(약시) : 글자 크기 18p 이상
 - 글꼴 : 서울서체 등 공공디자인 반영

- 슬라이드 29
- 제목 : 축지도 형상 (1)
- 내용 :
 - 크기
 - 최대 A3(297×420mm) 정도 이내
 - A3 이내로 표기 불가능시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 및 단체 검토 의뢰
 - 설치위치
 - 점자안내판 내의 좌측 하단부

- 슬라이드 30
- 제목 : 촉지도 형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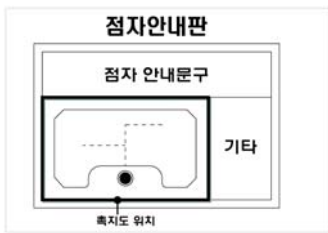


그림 21. 점자안내판 내의 촉지도 위치

- 슬라이드 31
- 제목 : 촉지도 형상 (3)
- 내용 :
 - 방위
 - 실제 내부 공간 배치와 일치
 - 인위적으로 틀어지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
 - 고정 불가시 : 방위 및 위치 정기적 확인

- 재질
 - 쾌적한 촉지 재질 및 마감
 - 장기간 사용시 품질 저하, 손상 방지
 - 온도 변화에 무영향
 - 청결 유지

- 슬라이드 32
- 제목 : 감사합니다.
- 내용 :

<http://www.kbufac.or.kr>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보도편

I. 용어 정리 및 적용 범위

i. 용어 정리

1.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시각에 장애가 발생하여 보행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약시자와 전맹인을 지칭한다. 약시자는 미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거나 제한된 범위만 볼 수 있어 강한 대조나 뚜렷한 윤곽만 인지 가능한 사람을 지칭하며, 전맹인은 전혀 시각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음향 또는 촉각정보에 의지하는 사람

※ 시각장애인의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음.

2. "보도"(歩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3.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4. "노상시설"이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5. “보행장애물”이란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등의 보도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금번 매뉴얼에서는 모든 노상시설을 포함하는 개념

6. "보행시설물"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

7. "보도의 유효폭"이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 보행장애물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
9. "연결로"란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
10. "환경시설대"란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
11. "입체횡단시설"란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12. "턱낮추기"란 장애인등,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
13. "연석경사로"란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
14. "경사로"란 계단이 설치된 육교나 지하도, 건물 진입로 등에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등의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완만한 기울기의 경사로
15. "점자블록"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하며, 위치 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음
16. "음향교통신호기"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음향신호로 횡단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17. "유도신호장치"란 시각장애인이 가로를 통행할 때에 이용하는 점자블록 등의 촉각 유도와 함께 건물의 입구나 현관 및 각종 목표 지점 등에 부착하여 일정한 음을 발생시켜 청각유도를 하는 장치
1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

1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20.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21.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22.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
23.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24.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
25.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
26.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27. "차량진출입부"란 자동차 등이 해당 건축물에 주차하거나 진입하기 위해 들어가고 나가는 보도와 교행되는 부분
28. "고원식횡단보도"란 횡단하는 부근의 높이를 보도의 높이까지 높여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거나 횡단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
29. "자동차 진입억제용말뚝"이란 턱낮추기한 부분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볼라드"라고 함

ii. 적용 범위

본 매뉴얼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그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도록 한다.

II 보도

1) 노상시설(장애물구역)을 제외한 유효폭 2m 이상의 보도

① 설계원칙

-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기준선의 마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침요약

- 보도의 유효폭, 평탄한 바닥마감, 완만한 횡단경사, 보행자 공간의 연속성 확보, 보차의 구분, 장애물 제거, 선형블록, 보행자 중심의 보차 교행, 주변과의 연계성.

(1) 일반지침

- 보도의 유효폭 : 보행장애물 등 노상시설을 제외한 최소폭으로 2m 이상을 확보
- 평탄한 바닥마감, 보도의 마감재 평탄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보도블록인 경우 줄눈 간격은 1cm 미만으로 함.
- 노상의 배수처리를 위한 횡단경사는 보행할 때 방해되지 않는 수준, 치우치지 않은 경도의 경사로 해야 함.
- 보도와 차도는 연석을 설치하여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연석의 최소 높이는 25cm 이하로 하며, 보도와 질감, 색상이 구분이 되는 재질로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보도는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구획되어야 함.

(2) 장애물 제거

- 가로수, 가로등, 분전반, 버스정류장 등을 위한 벤치 또는 케노피(canopy), 우체통, 노점, 휴지통, 불법 블라드, 자전거보관대 등은 보행자의 연속적, 일관성있는 통행 경로에 방해가 되므로 제거되어야 함.
- 보도에 배수로 덮개가 있을 경우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도면에서 상부 2.5m 높이 까지는 가지치기 제거, 건물의 부수적인 간판 등 장애물이 제거 되어야 한다.

(3) 선형블록의 설치

- 시각장애인의 보행 기준선인 선형블록을 보도에 설치하여 안전한 직선 보행을 유도하도록 한다.
- 선형블록의 설치위치는 단면으로 봤을 때 차도에서 먼쪽, 즉 도로 경계선(boundary line of road) 쪽에서 60cm 떨어진 보도 부분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선형블록의 재질은 KS규격에 만족해야 하며, 실외의 경우 석재, 콘크리트 등 내구성이 강한 마감재로 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 PVC, 고무재질, 철재 사용은 금한다.
- 선형블록의 외곽선에서 최소 좌우 60cm에는 보행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4) 보행자 중심의 보차 교행

- 차량 진입출입구 등 부득이 보차가 교행되는 부분은 보도를 고원식으로하여 차량의 감속을 유도함.(단 국지도로(이면도로)는 제외한다.)

(5) 주변과의 연계성

- 관공서, 종합병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주변 보도에는 해당 시설의 접근로 이르기까지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한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선형블록의 유도 시작은 인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부터 하도록 한다.

2) 횡단보도

① 설계원칙

-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턱낮춤, 점자블록 및 음향신호기 설치 등 편의시설이 유기적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침요약

- (부분)턱낮추기,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볼라드) 지양,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설치

(1) 일반지침

- 횡단보도의 경우 유모차, 휠체어사용자 등을 위해 (부분) 턱낮추기를 해야 한다. 이때 단차는 최소 2cm 이하로 해야 한다.

or

-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 폭만큼 턱을 낮추어야 한다. 이때 단차는 최소 2c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볼라드) 지양

-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는 위해 설치하는 말뚝, 볼라드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 보행안전법 과태료 부과 제30조(과태료)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등 이미 법적 근거 사항이 있는 만큼 신고 및 제도적 장치로 사전에 차량의 보도 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마련이 필요하다.

- 횡단보도에 부분턱낮추기를 한 경우 볼라드 설치를 금한다.

- 횡단보도 및 보도 환경상 볼라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로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점자블록의 설치

- 횡단보도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2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턱 낮춤 횡단보도의 경우 턱낮춤을 한 곳 전면에는 점형블록의 설치를 생략하도록 하며, 단차가 있는 횡단보도의 폭만큼만 점형블록 2중 설치하도록 한다.

- 점형블록의 세부 설계 원칙은 아래와 같다.

가. 점형블록은 차도로부터 30cm 전면(前面)에 설치한다.(연석의 폭 포함)

나. 점형블록 설치 방향은 횡단하는 방향에 수직이 되게 하며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재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선형블록을 2줄(두겹)을 붙여서 설치하도록 나와 있으나 이런 경우 과잉으로 설치되어 자칫 시각장애인 보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매뉴얼에서는 한줄(한겹)로 설치하도록 한다.

(4) 보행장애물

- 노상시설 뿐만 아니라 임시적인 지장물도 보행장애물로 구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노점상, 간판 등 임시적인 장애물은 지자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억제되어야 하며, 민원 및 조사를 통해 발견을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경우 보행자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버려진 자전거가 방치되는 등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자전거 보관소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관련 현행법 수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현행	수정안	사유
계단 또는 승강기	계단, 승강기 계단과 승강기 를 나누어서	계단 또는 승강기라 되어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의 시설만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 등 사고로 인한 피난시, 5층 이하의 건축물(현행 건축법상 5층이하의 건축물은 승강기가 의무가 아님)에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가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구조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현행	수정안	사유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신설 (4)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시행규칙 세부기준에 명시하여 설치를 독려하고자 함.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5) 손잡이의 양끝부분 <u>층수·위치·목적지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u> 을 부착하여야 한다.(굴절부분 생략)	문구가 모호하여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u>앞</u>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통행인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손잡이는 양측면에 설치해야 함.

현행	수정안	사유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에는 층수·위치·목적지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굴절부분 생략)	문구가 모호하여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
<p>9. 장애인용 승강기</p> <p>다. 이용자 조작설비</p> <p>(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라. 기타 설비</p> <p>(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p>	<p>9. 장애인용 승강기</p> <p>다. 이용자 조작설비</p> <p>(4) 조작반·통화장치 등 <u>내·외부 모든 버튼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버튼 안에 부착이 불가할 경우 버튼 왼쪽에 부착하여야 한다.</u></p> <p>라. 기타 설비</p> <p>(8) <u>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과 외부의 호출 선택버튼</u>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 등을 안내해주어야 한다. <u>내부의 층수선택버튼과 외부의 호출 선택버튼은 토글방식이어야 하며,</u>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 등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p>	승강기 내·외부의 모든 조작버튼에 점자표시를 의무하고 있지만, 문구가 모호하여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또한, 승강기 외부 호출버튼까지 토글방식으로 하여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p>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p> <p>다. 손잡이</p> <p>(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p>	<p>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p> <p>다. 손잡이</p> <p>(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목적지 등을 나타내는 점자</p>	계단과 같이 에스컬레이터 0.3미터 전면에 진입폭 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이용자의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수정안	사유
을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라. 점자블록 (1) 에스컬레이터 시·종점 0.3미터 전 면에는 진입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설치 된 경우 타는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 유도하여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 실 가. 일반사항 (2) 재질과 마감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 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 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 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 실 가. 일반사항 (2) 재질과 마감 (나) <u>화장실 입구 점자표지판</u> <u>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의</u>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 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 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 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현재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 록을 설치하여 다른 이용자 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있 음. 점자블록은 점자표지판 쪽에 설치되어 화장실 이용 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함(본 회 설치매뉴 얼 참고)
라. 세면대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 야 한다.	라. 세면대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 야 한다. <u>다만, KS표준</u> <u>형일 경우 설치하지 아</u> <u>니 한다.</u>	KS 표준에 “온냉수 혼합 꼭지의 레버 또는 핸들의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 을 온수, 오른쪽을 냉수 로 하는 것이 좋다.” 일 경우에는 점자표시를 생략 해도 무방하나, 위의 내용 과 반대일 경우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 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 색을 사용하되, <u>바닥재 색상이 황색계</u> <u>열일 경우에는 흰색 또는 녹색으로</u>	점자블록의 재질, 색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원칙을 무시하는 재질과 색상을 사용하여 시각장 애인의 보행에 위험요소로

현행	수정안	사유
<p>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p> <p>(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나. 설치방법</p> <p>(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p> <p>(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p>	<p>할 수 있다.</p> <p>(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에는 금속, 합성소재 등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내의 경우 바닥 철거가 불가능하여 접착형, 앵커나 볼트 고정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합성불연소재로 설치할 수 있다.</p> <p>나. 설치방법</p> <p>(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조작반·화장실 입구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p> <p>(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 및 주출입구와 연결된 실내 주요 시설에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p>	<p>작용되고 있어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여 악용과 오해를 방지하고자 함.</p>

현행	수정안	사유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라. 기타 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라. 기타 설비 (1) <u>객실등의 방이름은 양각으로 표기하고</u> , 출입문옆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객실번호나 방이름을 양각화하여 점자를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함.

시행규칙 [별표+3] 휠체어등을비치해야하는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범위와비치용품의종료[제6조 관련]

현행	수정안	사유
8배율 이상의 확대경	4배율 이상의 확대경	확대경이 필요한 경증시각장애인(4~6급)의 경우 4배율 이상의 확대경만으로도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	개정안	사유
<p>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p>②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6.1]</p>	<p>- 1항 5호 및 2항 삭제</p>	<p>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하 블라드)은 보행안전시설물이 아니라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규정에 맞게 설치 운영되어야 함. 현재 불법 블라드도 철거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블라드를 보행안전시설물로 법으로 정해 오히려 설치를 장려하고 있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도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CCTV설치 운영, 시민포상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문제이지 무분별하게 블라드만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임. 또한 오히려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를 독려하는 것임.</p>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0.6.30>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사유
<p>1. 교통수단 나. 철도차량 (6) 장애인전용화장실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하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1. 교통수단 나. 철도차량 (6) <u>장애인전용화장실 및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u> (다) <u>장애인전용화장실 및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하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u></p>	<p>시각장애 특성상 장애물이 많은 장애인전용 화장실은 보다 일반화장실을 이용빈도가 매우 높음으로 점자표지판은 일반화장실에도 부착되어야 한다.</p>
<p>1. 교통수단 마. 선박 (8) 출입구 통로 (나)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의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p>	<p>1. 교통수단 마. 선박 (8) 출입구 통로 (나)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u>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u>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u>점자표지판을</u> 부착하여야 한다.</p>	<p>현행 손잡이 설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p>
<p>2. 여객시설 나. 주출입구 (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나) 여객시설 안의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 1.5미터 높이에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2. 여객시설 나. 주출입구 (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나) 여객시설 안의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 1.5미터 높이에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u>방의 이름을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u></p>	<p>점자표시 이외의 양각화 하여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p>

현행	개정안	사유
<p>2. 여객시설</p> <p>나. 주출입구</p> <p>(4) 기타 시설</p> <p>(가) 여객시설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p>	<p>2. 여객시설</p> <p>나. 주출입구</p> <p>(4) 기타 시설</p> <p>(가) 여객시설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u>주출입구 폭만큼 설치하거나</u>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p>	<p>점형블록 설치위치와 기준을 보다 구체적 제시하고자 함.</p>
<p>2. 여객시설</p> <p>라. 통로</p> <p>(2) 바닥</p> <p>(다) 계단·승강기·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p>	<p>2. 여객시설</p> <p>라. 통로</p> <p>(2) 바닥</p> <p>(다) <u>계단·승강기 조작반·화장실 입구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u> 벽면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p>	<p>점형블록 설치위치를 보다 구체적 제시하고자 함.</p>
<p>2. 여객시설</p> <p>바. 승강기</p> <p>(3) 이용자 조작설비</p> <p>(라)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4) 기타 시설</p>	<p>2. 여객시설</p> <p>바. 승강기</p> <p>(3) 이용자 조작설비</p> <p>(라) <u>조작반·통화장치 등 내외부 모든 버튼 안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버튼 안에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버튼 왼쪽에 부착하여야 한다.</u></p> <p>(4) 기타 시설</p> <p>신설</p> <p>(아)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과 외부의 호출 선택버튼을</p>	<p>승강기 버튼과 함께 점자가 병기 표기되어야 함. 점자표기는 모든 버튼에 설치되어야 함.</p> <p>편의증진법 중 교통부분이 교통약자법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p>

현행	개정안	사유
	<p>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 등을 안내해주어야 한다. 내부의 층수선택버튼과 외부의 호출 선택버튼은 토글방식이어야 하며,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 등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p> <p>(자)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p> <p>(차)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누락된 부분 추가</p>
<p>2. 여객시설 사. 에스컬레이터 (3) 손잡이 (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2. 여객시설 사. 에스컬레이터 (3) 손잡이 (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목적지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신설 (4) 점자블록 (가) 에스컬레이터 사·종점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설치</p>	<p>문구가 모호하여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p> <p>계단과 같이 에스컬레이터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p>

현행	개정안	사유
	된 경우 타는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 유도하여야 한다.	있음.
<p>2. 여객시설</p> <p>아. 계단</p> <p>(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p> <p>(가)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5) 재질 및 마감</p> <p>(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마감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p>	<p>2. 여객시설</p> <p>아. 계단</p> <p>(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p> <p>(가) 계단의 <u>앞측면</u>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5) 재질 및 마감</p> <p>(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u>계단의 폭만큼</u>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마감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p>	<p>올라가고 내려가는 승객의 우측통행을 위해 손잡이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함.</p> <p>점형블록 설치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p>
<p>2. 여객시설</p> <p>자. 장애인전용화장실</p> <p>(1) 일반사항</p> <p>(라)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p> <p>(마)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2. 여객시설</p> <p>자. <u>장애인전용화장실 및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u></p> <p>(1) 일반사항</p> <p>(라) <u>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u>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p> <p>(마) <u>장애인전용화장실 및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u>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시각장애인은 일반화장실을 사용하므로, 점자표지판은 장애인전용 및 일반화장실에 설치되어야 하며, 점자블록은 일반화장실에 설치되어야 함.</p>

현행	개정안	사유
<p>2. 여객시설</p> <p>차. 점자블록</p> <p>(2) 규격 및 색상</p> <p>(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p> <p>(3) 설치방법</p> <p>(가) 점형블록은 계단·승강기·화장실 및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p>	<p>2. 여객시설</p> <p>차. 점자블록</p> <p>(2) 규격 및 색상</p> <p>(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u>바닥재 색상이 황색계열일 경우에는 흰색 또는 녹색으로 할 수 있다.</u></p> <p>(3) 설치방법</p> <p>(가) 점형블록은 <u>계단·승강기 조작반·화장실 입구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 및 승강장 스크린도어 자동문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u></p>	<p>점자블록의 재질, 색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보다 자세하게 표현하여 악용과 오해를 방지하고자 함.</p>
<p>2. 여객시설</p> <p>너.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p> <p>(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 안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p>(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p>	<p>2. 여객시설</p> <p>너.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p> <p>(3) 승강장의 <u>스크린도어 자동문 0.3미터 전면에 문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4)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u>안전발판을 설치하여 간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u> 다만, <u>인적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u></p>	<p>난간식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는 100% 안전한 시설물이 아니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p> <p>또한 승강장과 차량 간격이 기준 이상일 경우 안전발판을 설치하여 발빠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p>

현행	개정안	사유
<p>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6)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6) <u>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스크린도어 고정문 양쪽에는 목적지, 승차위치 등을 나타내는 목자와 점자 병기 표지판을 1.5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u></p>	<p>양쪽 고정문에 차량 목적지(장암방면)와 승차위치(1-4) 등을 목자(한글)와 점자를 표기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함.</p>
<p>3. 도로</p> <p>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p> <p>(7) 점자블록</p>	<p>3. 도로</p> <p>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p> <p>(7) 점자블록</p> <p>신설</p> <p>(라)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에는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마) 선형블록은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 출입구,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공서, 공공건축물 및 시설 등의 주접근로, 횡단보도 등과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주요시설 등이 서로 선형블록으로 연결되지 못해 보도를 보행하는 시각장애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명확한 보행기준인 선형블록을 설치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여야 함.</p>

시행규칙 [별표 2]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9조제1항관련)

현행	수정안	사유
<p>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p> <p>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p> <p>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p> <p>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u>보행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u></p> <p>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u>유연성이 있는</u>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p> <p>모호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자 함.</p>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관련 수정 의견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 팀장 이진원

I. 공통사항

○ 점수 평점

-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등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평가 항목점수가 전체 총점에 비해 매우 적음.(점형블록, 점자표기 설치시 평가 점수 1.0점)

○ 내용 미흡

- 계단 손잡이용 점자표지판의 경우 들어갈 문구, 재질, 시공방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실제 임시방편적인 투명테이프식 재질을 사용하여 내구연한이 얼마 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나, 접착식 등의 잘못된 시공으로 이물질 끼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많음, 보통 점자표지판의 내구연한은 2년 정도로 함)
- 점자블록의 설치 여부만을 판단함, 설치위치, 재질, 시공방법들도 평가지표에 추가되어야 함.
- 선형블록을 설치할 경우 등급 외 판정을 하여(과락(科落) 처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직선 보행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장애물로 판단하고 있음. 이는 단지 BF인증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있어 다른 지침에 오해의 소지 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 우선적으로 수정, 개정되어야 함.

※보도, 여객시설, 접근로 등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됨.

II. 대상시설별

○ 지역

- BF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 이용시설의 집적 및 계획 등 인증을 하기 위한 대상의 스케일이 광범위하여 평가적용 및 판단 근거 등이 모호함.
- 일정 크기의 단지정도가 아니라 도시전체에 대한 인증 평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심사단마다 평가가 상충될 것임.
- 실제 평가부분 4의 경우는 종합평가라 하여 등급 구분 없이 기술하는 부분이 있음.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1.3 보행안전구역

- 보행안전구역은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서울시,2012)에서 제시한 용어로 현재 기존 점자블록 설치 지침 사항과 상충되는 내용을 폐지하여 혼동을 최소화하기로 함(현, 서울시발간 보도공사 설계 시공매뉴얼)

1.4 유도방식

- 유도 및 경고용 띠는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서울시,2012)에서 제시한 용어로 현재 기존 점자블록 설치 지침 사항과 상충되는 내용을 폐지하여 혼동을 최소화하기로 함(현, 서울시발간 보도공사 설계 시공매뉴얼)

1.4.2 유도 방식 재질 및 색상

- 산출기준에 ‘선형블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형블록으로 설치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으로

2.1.4.2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 편의증진법상 의무인 버튼을 동작시 층수 안내, 토글방식인 취소가능하며 ‘취소’음 출력에 대한 평가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2.2.3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 횡단보도 진입부에 점형블록 설치는 교통약자법 의무사항임, 본 지침에는 눈부심 없는 고휘도 반사재료사용을 최우수, 점형블록설치를 우수로 하여 점형블록 생략을 유도함.

2.3.1 교통신호기 설치위치

- 횡단보도 대기공간 중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에게 또 다른 장애가 됨.

2.3.3. 음향(진동)신호기

- 국내에 진동신호기에 대한 평가 및 이용만족도 조사 없이 외국의 사례를 반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행 환경을 간과한 사례로 심도있는 이용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2.3.4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 횡단보도 대기선의 중심은 보행자에게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설치 높이도 1.0~1.2m 정도로 설치해야함(설치 높이는 음향신호기 무선규격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상 조사를 통한 수치임)

3.1.3 승하차시설 경고방식

- 현행법(교통약자법)에서 버스정류장 등 승하차 시설에는 점형블록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적 의무내용을 대체물을 통해 대체설치 가능토록하며 이를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없음)

○ 왕복 2,4차로 이상 도로

2.2.2 고원식 횡단보도 색상 및 재질, 배수설비

- 고원식 횡단보도도 전면에 법적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함(대체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이외 사항은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와 같음.

○ 공원

1.1.1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 즉 접근로에 점자블록을 설치를 의무로 했지만 본 지침은 점자블록 설치 관련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2.1.1 안내설비, 안내판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식 안내판은 설치 의무 사항이므로 산출기준을 일반부터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로 수정해야 함.

2.1.3 통합안내설비

- 점자블록의 대체한 제품의 설치가 점자블록 설치보다 배점 높게 평가한 점은 수정되어야 함.

또한 우수, 최우수 평가도 일반 평가인 ‘점자블록의 연속 설치’를 만족시켜야 함.

4.3.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최소 평점인 일반에 점자블록 설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 우수에는 일반(3급)을 만족하며 선형블록 유도 설치, 최우수에는 우수(2급)을 만족하며 음성유도장치 설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
- 최소 조건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해야 함으로 일반에 지폐 투입구, 조작부, 버튼에 점자 표시 설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

5.1 공원내부보행로(5.1.1~5.1.7 공통)

- 시각장애인의 보행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선형블록을 설치하거나 확연히 차이나는 바닥 재질의 보행로 구획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유도, 보행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야 함.
- 특히 5.1.7의 경우 보행 유도존, 전자식 신호장치, 물길 등 유도레일 등은 그 기능과 적용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며, 검증되지 않아 자칫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바, 삭제 요망됨.

○ 여객시설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 교통약자의 안전한 접근과 주출입구 정보를 주기 위해 선형블록 유도설치 항목 추가 요망.

2.1.5 통로 손잡이

- 손잡이 끝부근 점자표지판 설치의 의무사항이므로 점자 표기는 ‘우수’ 사항이 아니라 최소한 ‘일반’에서부터 평가되어야 함.

2.2.4 계단 손잡이

- 손잡이의 양끝부분에는 층수·위치·목적지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으로 평가 문구 수정 요망.

2.2.5 계단 점형블록

- 계단 시작과 끝 지점의 0.3m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로 문구 수정 요망.

2.4.4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 승강기 조작반 버튼 동작시 동작음 출력, 토글방식인 경우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항목이 평가에서 누락되어 있음.(교통약자법에선 권장으로 되어 있어 우수 등급정도에 기재되어야 함.)

함.)

2.4.7 승강기 점자블록

- 점형블록 설치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최우수가 아니라 최소조건인 우수에서 부터 평가되어야 함.(우수에서는 점형블록 설치 여부, 최우수는 재질 및 시공방법, 2장 설치 등으로 조정해야 함)

3.1.2 화장실 안내표지판

- 화장실 점자표지판 전면 점형블록 설치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우수가 아닌 일반에서부터 점형블록 설치 여부를 평가해야 함.

3.2.1 화장실의 접근

- 평가 배점의 조정이 요망됨. 일반은 점형블록 설치, 우수는 일반조건을 만족하며 선형블록의 유도 설치, 최우수는 우수조건을 만족하며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등)를 설치

4.1.1 점자블록 설치 위치

- 산출기준 중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음’의 내용은 실제 교통약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함’의 지침과 상충되므로 모법인 교통약자법의 지침에 따라 수정되어야 함.

4.2.1 안내판 설치

- 주출입구(외부출입구 포함) 인근에 해당 여객시설의 전반적인 구조 및 방위를 알려줄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항목 추가 요망.
- 산출기준 중 ‘양각 글자체를 사용’은 오히려 도면을 촉지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지양하도록 수정 요망됨.

4.2.2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점자블록은 외부 출입구에서부터 대합실, 매표, 개찰구에 이어 승강장, 승강구 위치까지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함으로 4.2.2 평가항목은 음성유도기, 점자블록을 분류하여 따로 평가해야 함.(4.1.1 항목과 연관지어 따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함)
- 주출입구에서부터 대합실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매표시설,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 요소에 연속적으로 음성신호장치(음성유도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 항목도 마련해야 함.
- 산출기준에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385.0(dB)’ 되어 있지만 음성안내장치 자체의 무선

규격에 따르면 실내는 40dB, 실외는 60dB 정도로 해야 함.(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규제기준은 최대 80dB임)

5.1.1 매표소

- 매표소 전면 점형블록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우수가 아닌 일반에서부터 준수되어야 함.

5.1.2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등도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므로 여러 대 중 한 대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므로 우수가 아닌 일반에서부터 준수되어야 함.

5.2.1. 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구

- 시각장애인의 통과를 위한 선형블록의 유도 설치 및 점형블록 마감 내용 누락되었음.(휠체어 장애인용 개찰구와 구별하여 설치)

5.3 승강장

- 승강장 승강구 부근은 스크린도어와 점형블록을 연계하여 평가해야 함.
- 일반에 스크린도어 설치 및 스크린도어 전면 점형블록 설치, 우수는 일반을 만족하며 스크린도어에 방면 및 차량번호 기입한 점자표지판을 한면에 설치, 최우수는 우수를 만족하며 가동문 기준 양쪽 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며 추가적으로 문열림 상황과 열차 방면을 알려줄 수 있는 점멸등 및 LED 판을 설치함으로 수정되어야 함.

※ 난간식 스크린도어의 경우 그 기능이 충분치 않으므로 부수적인 편의시설이 완비해 있을 지라도 일반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 건축물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인근 보도에서 안전한 시설 접근을 위해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함. 항목 추가 요망.

1.3.7 주출입구(문) 경고블록

- 경고블록은 해당 기능을 언급한 내용이므로 점형블록으로 수정해야 함. 또한 평가항목에 ‘문 폭만큼’이 기입되어야 하며 일반에서부터 점형블록 설치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편의증진법 상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에 점자표지판 설치하는 의무임. 따라서 일반에서부터 점자표지판 부착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2.5 연속손잡이

- 편의증진법 상 장애인전용시설의 경우 손잡이 부근 점자표지판 설치가 의무이므로 해당 산술 기준에 장애인전용시설인 경우 점자표지판 의무설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

2.3.5 점형블록

- 편의증진법 상 점형블록 설치하는 의무이므로 일반에서부터 점형블록 설치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계단 폭만큼'이 기입되어야 함.

2.5.4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 양각형태의 버튼식 및 점멸등, 층수 안내 등은 편의증진법 상 의무 항목으로 일반에서부터 평가되어야 함.

2.5.7 승강기 점자블록

- 편의증진법 상 점형블록 설치하는 의무항목으로 우수에서부터 설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3.1.2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안내표지판,

- 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은 일반화장실에 설치하도록 함. 또한 법상 의무 사항이므로 일반에서부터 점형블록 설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장애인전용시설의 경우 음성안내장치 의무 설치이므로 평가 항목 추가가 요망됨.

4.1.2 점자블록

- 최우수 평가 항목의 의미가 모호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하며, 시공 및 재질 부분도 평가되어야 함.

5.3.1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편의 및 인적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안내데스크 및 접수대까지 선형 블록을 유도 설치할 수 있음(권장)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사업소개 및 실적(9월 기준)

사업 1.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 사업목적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을 통해 유능한 전문 점검요원을 양성하며, 나아가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저변 확대와 상시 전문 점검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힘씀

◇ 사업 목표

- 교육 연 4회(실인원 130명, 연인원 300명)
- 워크숍 연 1회(실인원 30명, 연인원 60명)

◇ 대상

- 연합회 16개 지부 및 지회, 유관단체 직원

◇ 사업 실적

	목표	실적	대비	비고
기본과정	연 3회	연3회	114.44%	서울/경북/호남
	실인원 90명 연인원 180명	실인원 103명 연인원 206명		
심화과정	연1회	연1회	72.5%	서울
	실인원 40명 연인원 120명	실인원 29명 연인원 87명		
워크숍	연1회 실인원 30명 연인원 60명			

◇ 만족도조사

- 기본과정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전체만족도	1(1.32%)	1(1.32%)	10(13.16%)	48(63.16%)	16(21.05%)	76(100%)
교육기간 만족도	1(1.32%)	6(7.89%)	17(22.37%)	41(53.95%)	11(14.47%)	76(100%)
적절한 교육기간	9(29.03%)	20(64.52%)	1(1.32%)	1(1.32%)	0	31(100%)
교육과정 만족도	1(1.32%)	1(1.32%)	16(21.05%)	46(60.53%)	12(15.79%)	76(100%)
강사진 만족도	1(1.32%)	2(2.63%)	4(5.26%)	52(68.42%)	17(22.37%)	76(100%)
교육인원 만족도	1(1.32%)	2(2.63%)	19(25%)	41(53.95%)	13(17.11%)	76(100%)

- 심화과정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전체만족도	0	0	3(12%)	13(52%)	9(36%)	25(100%)
교육기간 만족도	0	3(12%)	2(8%)	15(60%)	5(20%)	25(100%)
적절한 교육기간	0	4(57.14%)	1(14.29%)	1(14.29%)	1(14.29%)	7(100%)
교육과정 만족도	0	0	6(24%)	16(64%)	3(12%)	25(100%)
강사진 만족도	0	0	5(20%)	13(52%)	7(28%)	25(100%)
교육인원 만족도	0	0	4(16%)	14(56%)	7(28%)	25(100%)

사업 2. 시각장애이용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 사업목적

- 시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관공서 및 대중교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및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하여 그 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 대 정부활동과 언론홍보를 통한 대 국민활동에 힘쓰고 있음

◇ 사업 목표

- 공공시설 423건
- 교통시설 398건
- 업체 모니터링 144건

◇ 사업 실적(공공시설)

- 진행중

◇ 사업 실적(교통시설)

- 강서도로사업소 음향신호기 설치 실태 종합분석

대상시설	설치율(N/%)		망실(N/%)	고장(N/%)	전체(N/%)
	완전설치(N/%)	미흡설치(N/%)			
음향신호기	401(26.73)	1,050(70.00)	1(0.07)	48(3.20)	1,500(100.0)

- 강서도로사업소 음향신호기 미흡설치 세부사항

구분		미흡율(N/%)
접근성		404(10.65)
버튼높이 및 위치		455(11.99)
버튼색상		166(4.37)
표기		250(6.59)
음질상태		236(6.22)
리모컨	슬리핑	116(3.06)
	신호안내음	192(5.06)
	멜로디	137(3.61)
	음성전달	397(10.46)
	수신거리	95(2.50)
	예고음	320(8.43)
	시작음	229(6.03)
	점멸음	212(7.30)
	바탕음	277(7.30)
수동식버튼	경고음	207(5.45)
	동작여부	102(2.69)

◇ 사업실적(업체 모니터링)

- 블라드 설치실태 종합분석

대상시설	설치율(N/%)	
	완전설치 N(%)	미흡설치 N(%)
총계	56(19.44)	232(80.56)
강서구	18(20.69)	69(79.31)
구로구	11(12.94)	74(87.06)
양천구	14(26.92)	38(73.08)
영등포구	13(20.31)	51(79.69)

- 블라드 미흡설치 세부사항

구분	미흡율(N/%)
재질	164(35.19)
규격	83(17.81)
간격	53(11.37)
반사도료	166(35.62)

사업 3.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 사업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문헌 및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외국의 편의시설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소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고 반영하는데 힘쓰고 있음

◇ 사업 목표

- 세미나 1회(실인원 2명, 연인원 10명)
- 공청회 1회
- 연구 1회

◇ 사업 실적

- 세미나 : CSUN 2013 TPDC 참가
- 연구 : 편의증진을 위한 연구(Ks b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시 개정 건)

사업 4. 홍보 및 저변 확대 사업

◇ 사업목적

-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성 알리고 관련 콘텐츠를 배포함. 또한 센터의 활동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보도자료 및 이슈를 게시하여 본 센터를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 목표

- 제작1건(모바일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방문 로그수 110,000건

◇ 사업 실적

- 홈페이지 방문 로그수 123,125건(111.9%)

사업 5.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 사업

◇ 사업목적

-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를 위하여 대상 편의시설별로 상세히 설치지침과 그에 따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종사자와 전기, 건축 분야 전문가들에게 올바른 설치 및 시공법을 제공하도록 함

◇ 사업 목표

- 제작1건

◇ 사업 실적

- 진행중

사업 6.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상담 및 점검 사업

◇ 사업목적

- 상담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의뢰 업체 및 기관에 시각장애인의 이해에 기초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대한 법률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자 하며, 전문 인력을 통한 점검 및 회의를 실시하여 올바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

◇ 사업 목표

- 점검 100건
- 회의 60회
- 상담 360건

◇ 사업 실적

- 점검 93건(93%)
- 회의 119건(198.3%)
- 상담 260건(72.2%)